

#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

- 제정 : 2014. 1. 21.
- 개정 : 2015. 5. 13.
- 개정 : 2016. 3. 9.
- 개정 : 2019. 6. 18.
- 개정 : 2021. 9. 1.
- 개정 : 2022. 3. 1.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학칙 제23조의3 규정에 의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과정 및 입학정원)**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**제3조(수업연한)**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학사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(수업연한이 2년 인 학과는 2년 이상, 3년인 학과는 1년 이상) 운영 한다.

**제4조(입학자격)**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,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. 단,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과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학과의 관련학점을 50%이상 이수한 경우 관련과 졸업자로 인정한다.

**제5조(입학전형)**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의 입학전형 세부절차는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**제6조(교육과정)**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.

② 교육과정은 현장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되, 전문학사과정교육과 연계된 전공심화교육에 중점을 두어 편성 및 운영한다.

③ 교육과정은 학과별 교육과정편성위원회에서 심의하고,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.

**제7조(교과이수)** 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, 실험, 실습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.

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 학점은 전문학사과정의 취득학점 중 2년제는 72학점, 3년제는 108학점까지 인정하며, 최종 졸업학점은 132학점 이상으로 한다.

5-0-1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

③ 매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18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 단, 마지막 학기는 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이 132학점 이상일 경우 12학점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. 또한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.

**제8조(졸업 및 수수료)**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점 132학점을 이수한 자는 학칙 제24조에 근거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.

**제9조(수업료 및 입학금)**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사과정에 준하는 수준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0조(위원회)**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. 위원회는 입학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.

**제11조(학칙준용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 2015. 8. 24.이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